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2799호 |
|----------|--------|

제출년월일 2021. 7.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계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생활안정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생활안정 지원 방법 및 결정 등 규정(안 제7조)
- 라.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취소 및 환수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2021년 제2회 추경 반영(8,260백만원)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6. 21. ~ 7. 1.(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나) 경기도 : 안전기획과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생·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민에게 생계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따른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생활안정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의 발생·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교육·보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자로 본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의 소상공인
2.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 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시에 등록된 사립유치원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에 등록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에 등록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 재직 중인 택시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중 시 소재 주사무소·영업소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에 등록된 화훼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공급 농업경영체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에서 지정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12.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시에서 인증 받은 농촌체험관광패키지 운영 농가
1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에 허가·등록된 축산업 농가
14.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중 김포시가 관리하는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 상인
15. 그 밖에 시장이 코로나19의 발생·유행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생활·경영안정지원금
2. 제5조제3호 및 제4호: 비대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비
3. 제5조제5호: 방역지원비
4. 제5조제6호: 운영비
5. 제5조제7호: 차량운영비
6. 제5조제13호: 생활·경영안정지원금 또는 영농재료비
7. 제5조제14호: 환경 개선 물품비
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및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김포시 시

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생활안정 지원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김포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중복 지원이 필요하여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소관 실·과·소 | | 기획담당관 |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성명 | 기획담당관 박정우 |
| | 팀장 직위·성명 | 기획팀장 박준 |
|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김준세(☎2052)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5조(정의), 제6조(지원내용)

나. 비용 발생 요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생·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민에게 생계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안정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피해가 집중된 계층(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비용추계결과 : 8,260,085천원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
| 총 소요액 | 8,260,085 | - | - | - | - | 8,260,085 |
| 생활안정 지원 | 8,260,085 | - | - | - | - | 8,260,085 |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담당관 박정우 팀장 박 준

붙임 2

지원 세부 현황

(단위:천원)

| 부서명 | 사업명 및 사업내용 | 소요예산 | 지원방법 | 비 고 |
|--------|--|-----------|----------|-------------|
| | 합 계 | 8,260,085 | | |
| 문화예술과 | 집합금지업종(노래연습장) 생활경영안정지원금 - 1,000,000원*205개소 - 정부행정명령외 김포시 추가 자체명령 수행 | 205,000 | 현금 | 제5조 제1호 |
| 식품위생과 |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생활·경영안정지원금 - 1,000,000원*163개소=163,000천원(1~4차 집합금지) - 500,000원*4개소=2,000천원(4차 집합금지) - 유흥주점(122), 단란주점(41), 콜라텍(4) - 집행금지행정명령 장기화로 경영악화 | 165,000 | 현금 | 제5조 제1호 |
| 문화예술과 |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 - 500,000원*682명 - 전시공연활동 중단으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 341,000 | 현금 | 제5조 제2호 |
| 교육청소년과 | 초·중·고등학생 비대면 교육비 - 통신비 100,000원*63,008명 - 김포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주소지 불문) 62,400명 - 시 거주 관외 소재 학교 중·고등학생 308명 ▶ 초·중·고등학생은 관외 학교 재학생 없음 - 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만7세~만18세) 300명 | 6,300,800 | 현금 | 제5조 제3,4호 |
| 교육청소년과 | 사립유치원 위기극복 방역비용 지원 - 500,000원*45개소 - 각종 방역소모품 및 교구, 교재 소독 등 비용 | 22,500 | 현금 | 제5조 제5호 |
| 보육과 |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긴급운영비 500,000원*384개소 = 192,000천원 -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385,000원*41개소 = 15,785천원 - 가정보육전환시에도 운영됨에 따른 경영어려움 | 207,785 | 현금 | 제5조 제6,7호 |
| 대중교통과 | 일반택시기사 생활·경영안정지원금 - 800,000원*215명 - 동종업계 개인택시기사의 정부지원금 차액분 | 172,000 | 현금 | 제5조 제8호 |
| 대중교통과 | 전세버스기사 생활·경영안정지원금 - 1,000,000원*600명 - 관광버스경영악화(1차~3차 정부지원에서 배제) | 600,000 | 현금 | 제5조 제9호 |
| 농정과 | 위기극복 영농지원 - 500,000원*40농가 - 화훼(22), 친환경농산물 급식공급(15), 농촌체험휴양마을(3) - 정부 바우처 수령농가 제외 | 20,000 | 김포페이 | 제5조 제10,11호 |
| 농업진흥과 |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운영농가 지원 - 500,000원*18농가 | 9,000 | 김포페이 | 제5조 제12호 |
| 축수산과 | 축산농가 생활·경영안정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1,000,000원*27농가(살처분농가) - 영농재료 지원 300,000원*300농가(일반기축농가) | 117,000 | 현금 물품 | 제5조 제13호 |
| 일자리경제과 |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 천막 250,000원 * 400개소 - 5일장 휴장(5개월) 장기화 등 생계 어려움 | 100,000 | 물품 | 제5조 제14호 |